

2019년도 법무부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법무부공고 제2019 - 2호(2019.1.14.)로 공고한 “2019년도 법무부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응시원서 접수결과 재공고 사항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유능한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

★재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 당초 채용시험 공고 '법무부공고 제2019-2호(2019.1.14.)'의 응시원서 제출자 중 재공고 직위에 해당하는 접수자는 본 공고에 따른 접수로 처리함(재접수 불요).
- ※ 기존 응시원서 제출자 중 다른 직위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함.

1 선발예정인원 및 직급

○ 선발예정기관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계약기간
난민심사	전문임기제 다급	법무부 난민과A	1명	임용일 ~ 2년
		법무부 난민과B	1명	
		법무부 난민과C	1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A	1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B	1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C	1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E	1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F	1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G	1명	
		인천출입국·외국인청A	1명	
		인천출입국·외국인청B	1명	
		인천출입국·외국인청C	1명	
난민통역	전문임기제 다급	인천출입국·외국인청(러시아어)	1명	
		제주출입국·외국인청(아랍어)	1명	

※ 임용예정직위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직급 : 전문임기제 다급
- 응시방법 : 1개의 직위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담당예정 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
난민심사	법무부 난민과A ~ 법무부 난민과 C	○ 난민인정신청 접수 및 난민인정 심사(이의신청 심사)
	서울출입국·외국인청A ~ 서울출입국·외국인청G	○ 국가정황, 난민판례 및 해외 입법례 등 조사
	인천출입국·외국인청A ~ 인천출입국·외국인청C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 유관기관 협력, 각종 행정업무 처리 및 민원상담 등
난민통역	인천출입국·외국인청(러시아어)	○ 난민인정신청서 번역 및 난민면접 통역 ○ 각종 외국어 문서 작성 및 번역
	제주출입국·외국인청(아랍어)	○ 난민인정신청 접수, 난민심사 및 처우 지원 ○ 유관기관 협력, 각종 행정업무 처리 및 민원상담 등

3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6항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별표4의2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학력 · 거주지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채용 구분	응시자격 요건																																									
난민심사 및 난민통역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 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 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 위 요 건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 및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붙임 [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난민심사’ 분야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건별 차등 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등급별 차등 배점) ○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등급별 차등 배점)																																									
	<table><tr><th rowspan="2">FLEX</th><th colspan="3">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NEW TEPS</th><th rowspan="2">등급</th></tr><tr><th>CBT</th><th>PBT</th><th>IBT</th></tr><tr><td>900점 이상</td><td>263점 이상</td><td>623점 이상</td><td>115점 이상</td><td>941점 이상</td><td>900점 이상</td><td>525점 이상</td><td>A</td></tr><tr><td>800점~899점</td><td>243점~262점</td><td>593점~622점</td><td>107점~114점</td><td>880점~940점</td><td>800점~899점</td><td>452점~524점</td><td>B</td></tr><tr><td>700점~799점</td><td>227점~242점</td><td>567점~592점</td><td>99점~106점</td><td>790점~889점</td><td>700점~799점</td><td>386점~451점</td><td>C</td></tr></table>								FLEX	TOEFL			TOEIC	TEPS	NEW TEPS	등급	CBT	PBT	IBT	900점 이상	263점 이상	623점 이상	115점 이상	941점 이상	900점 이상	525점 이상	A	800점~899점	243점~262점	593점~622점	107점~114점	880점~940점	800점~899점	452점~524점	B	700점~799점	227점~242점	567점~592점	99점~106점	790점~889점	700점~799점	386점~451점
FLEX	TOEFL			TOEIC	TEPS	NEW TEPS	등급																																			
	CBT	PBT	IBT																																							
900점 이상	263점 이상	623점 이상	115점 이상	941점 이상	900점 이상	525점 이상	A																																			
800점~899점	243점~262점	593점~622점	107점~114점	880점~940점	800점~899점	452점~524점	B																																			
700점~799점	227점~242점	567점~592점	99점~106점	790점~889점	700점~799점	386점~451점	C																																			

<공통>

- 경력, 학위, 우대요건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 **경력요건, 학위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19.2.19.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19.2.1.)**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난민심사’ 분야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및 연구 실적 (**학위논문 제외**)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최근 5년 이내(‘14.1.1 이후)에 정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논문 및 연구실적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
 - * 2014.1.1. 이후 실시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
 - * 어학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점수만 인정함

5 시험 방법

가. 제 1 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임용예정직위별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경력, 논문·연구실적, 영어 어학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난민심사’ 분야만 해당)
--

나. 제 2 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위원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9. 1. 22.(화) ~ 2. 1.(금)	1. 28.(월) ~ 2. 1.(금)	2. 12.(화)	2. 19.(화)	3. 4.(월)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 1. 28.(월) ~ 2. 1.(금) 09:00 ~ 18:00 / 주말 접수불가

다. 접수처 : 임용예정기관에서만 접수

임용예정기관	주 소	전화번호
법무부 난민과 (우편접수만 가능)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416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편·방문접수)	(0801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02-2650-6214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우편·방문접수)	(22369)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운영지원팀	032-890-6407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우편·방문접수)	(63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운영지원팀	064-741-5412

※ 임용예정기관의 약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 참조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내에만 방문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겹봉투에 “전문임기제 다급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우편 접수된 원서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8 제출 서류

- * 아래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1)	○ 제출내역 체크 후 서명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	○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 학위, 업무실적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 A4 3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5)	○ A4 5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등 1부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담내역 등) ○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7. 자격요건 관련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6)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8)	○ 자필 기재 및 서명
※ 아래 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이 기재되도록 발급
10. 우대요건 관련 변호사 자격증 사본	○ '난민심사' 분야에 한함
11. 우대요건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등 1부	○ 해당자에 한함 ○ 위 6번 항목의 경력이 우대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6번 항목 경력(재직)증명서만 제출
12.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논문 및 연구실적 요약서 1부 <별지서식 9>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13. 우대요건 관련 '영어 능력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9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연봉한계액의 범위(2018년 기준)】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58,936천 원	41,859천 원

※ 2019년도에 임용될 경우, 연봉한계액이 보수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유의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 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치,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 【붙임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02-2110-4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붙임1】 전문임기제 다급 난민심사분야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법무부 난민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또는 난민실

주요업무	○ 난민인정신청 접수 및 난민인정 심사(이의신청 심사) ○ 국가정황, 난민판례 및 해외 입법례 등 조사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 유관기관 협력, 각종 행정업무 처리 및 민원상담 등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	--

필요지식	○ 난민협약, 난민법, 소송수행 등 관련 지식 ○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정치·사회 현황 등에 대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난민심사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유엔난민기구, 난민지원단체 등에서 난민 면접 및 보고서 작성 등 관련업무 수행 경력 ○ 직무분야 학위 : 문화학 계열, 인류학 계열, 지역학 계열, 국제학 계열, 법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	
	우대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 - 정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국내외 논문 및 연구실적에 한함(학위논문 제외)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 ○ 영어어학능력 우수자 - FLEX(700점 이상), TOEIC(790점 이상), TEPS(700점 이상), TOEFL[CBT(227점 이상), PBT(567점 이상), IBT(99점 이상)]

【붙임2】 전문임기제 다급 난민 **통역분야**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또는 난민실

주요업무	○ 난민인정신청서 번역 및 난민면접 통역 ○ 각종 외국어 문서 작성 및 번역 ○ 난민인정신청 접수, 난민심사 및 처우 지원 ○ 유관기관 협력, 각종 행정업무 처리 및 민원상담 등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	---

필요지식	○ 동시통역 / 순차통역 / 번역 지식 ○ 난민협약 및 난민법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통번역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러시아어, 아랍어, 불어) :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동시통역, 순차통역, 법률·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번역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 ○ 직무분야 학위(러시아어, 아랍어, 불어) : 통번역 계열, 어문학 계열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 - 정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국내외 논문 및 연구실적에 한함(학위논문 제외)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 ○ 영어어학능력 우수자 - FLEX(700점 이상), TOEIC(790점 이상), TEPS(700점 이상), TOEFL[CBT(227점 이상), PBT(567점 이상), IBT(99점 이상)]

(별지서식 1호)

응시분야 : () / 응시직위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제출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6	자격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필수	☐
7	자격요건 관련 학위증 사본	필수	☐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
10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
11	주민등록초본 사본 (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만	☐
12	우대요건 관련 변호사 자격증 사본	난민심사분야 해당자만	☐
13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해당자만	☐
14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
15	우대요건 관련 영어능력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응 시 원 서

본인은 2019년도 법무부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
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법무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응시직위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주민등록 번호	-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4	☐ 학위5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19년도 법무부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직위	
성명	(한글)	(한자)			
2019년 월 일					
법무부장관 ㉠ / ()출입국·외국인청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난민심사' 또는 '난민통역' 중 택 1
3. 응시직위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임용예정직위 1개만 표기함
(예시) : 법무부 난민과C, 서울출입국·외국인청F
4. 응시요건 :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택1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선택 오류사항 예시>

1.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택 1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4	☒ 학위5

2. 미 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4	☐ 학위5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이력서를 기준으로 함

5.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6.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7. 복수국적 : 예, 아니오 중 선택(체크) 표시
8.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거나
첨부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정부수입인지(7,000원)를 구입하여 응시원서 뒤에 첨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
인지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응시번호:

1. 공 통 사 항

응시 분야		응시 직위		응시 요건	경력			학위		성 명	
					☐ 경력 1	☐ 경력 2	☐ 경력 3	☐ 학위 4	☐ 학위 5		

2. 응 시 자 격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자격요건 충족 조건에 필요한 경력만 기재	20xx. x. x ~ 20xx. x. x (0년0개월)	사원	상세히 작성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자격요건 충족에	필요한 학위만 작성		

3. 우 대 사 항

변호사	자격증 취득일		자격검증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 근무 경력만 기재	20xx. x. x ~ 20xx. x. x (0년0개월)		사원	상세히 작성
관련 분야 연구/ 논문실적	제목		저자	학술지명	발행연월일
한 국 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어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 성 명 : (인)

이 력 서 작 성 요 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난민심사' 또는 '난민통역' 중 택 1
3. 응시직위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임용예정직위 1개만 표기함
(예시) : 법무부 난민과C, 서울출입국·외국인청F
4. 응시요건 :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택1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선택 오류사항 예시>

1.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택 1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4	☒ 학위5

2. 미 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요건	경력			학위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4	☐ 학위5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이력서를 기준으로 함

5. 응시자격

○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기관 등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위

-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③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6.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난민심사' 분야에 한함)

- ①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함
-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사본 1부 제출

○ 경력

-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기관 등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 기 소 개 서

☐ 응 시 분 야 :

☐ 응 시 직 위 :

☐ 성 명 :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 . 작 성 자 : (인/서명)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분야 :

☐ 응시직위 :

☐ 성명 :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글자크기는 14포인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 . 작성자 : (인/서명)

※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19년도 법무부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자로서 법무부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학위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생년월일 :

법무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당해 경력경쟁채용시험 진행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메일, 경력, 자격사항, 국적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9년도 법무부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무부에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19. . .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받는 자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자료 관리 주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해당 채용시험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 확인
제공하는 항목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의 삭제 시까지

※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법무부 전문임기제 다급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제3자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19. . .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논문, 연구실적

□ 논문

가. 논문제목 :

- 게재된 학술지 :
○ 게재 일자 :

나. 주요내용

- I. 연구목적
- II. 연구내용
-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주요 연구실적

- 게재된 학술지 :
- 제 목 :
- 내용 요지(A4용지 반매 이내)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요망)

- ※ 직무기술서에 따라 관련분야에서 정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논문 및 연구실적만 인정
- 등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 학교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음영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